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 안 번 호 5967

제안연월일: 2024. 11.

제 안 자: 교육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가. 상정경과

의안명	의안번호	대표발의자	발의일자	상정
초 • 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	제903호	임오경의원	2024. 6. 25.	○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1차 전체회의 (2024.8.8.)
	제1509호	백승아의원	2024. 7. 9.	○제417회 국회(임시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8.26.)
	제2401호	강경숙의원	2024. 7. 30.	○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2차 전체회의 (2024.9.24.)

- 나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(2024.9.25.)는 이상 3건의 「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」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.
- 다. 제418회 국회(정기회) 제9차 교육위원회(2024.11.5.)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,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 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는 악성 민원·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,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 등으로부터 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·교육청의 생활지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으나, 이에 필요한 예산, 인력, 시설 등의 지원은 아직 부족한 상황임.

이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강화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교육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3항 신설).

한편,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,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 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.

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,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, 행정적·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교육감 에게는 학교 민원 처리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, 민원 처리를 위 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하며,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에게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하도록 함(안 제30조의10 신설).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제4장제1절에 제30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30조의10(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된 민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민원"이라 한다)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1.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
 - 2.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 - 3.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
 - 4.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 한 사항
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1.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
- 2.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세부지원 방안
- 3.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	제20조의2(학교의 장 및 교원의
학생생활지도) ①・② (생 략)	학생생활지도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
	항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필
	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
	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
	지원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30조의10(학교민원 처리 계획
	의 수립·시행 등) ① 교육부장
	관은 학교의 장이 학교에 제기
	된 민원(이하 이 조에서 "학교
	민원"이라 한다)을 공정하고
	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
	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
	교민원 처리 계획을 수립・시
	행하여야 한다.
	1.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
	맞춘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
	<u>및 절차</u>
	2. 학교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
	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
	3.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

- 적 · 재정적 지원 방안
- 4.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
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민원 처리 계획의 내용과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민원처리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1. 학교민원을 처리하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
- 2. 학교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 적·재정적 세부지원 방안
- 3. 그 밖에 학교민원 처리를 위

 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

 인정한 사항
- ③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학생 및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